규제영향분석서

상호금융업감독규정

<목 차>

지역신협 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

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	이름	김준
소관부처 및	담당부서 (과)	중소서민금융과	작 성	직급	5급
작성자 인적사항	국장	윤창호	자	연락처	02-2100-2994
	과장	신진창		이메일	zero@korea.kr

중소서민금융정책관 윤창호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	1.규제사무명	지역신협 공동유대 [변경의 승인기준 등	
기본	2.규제조문	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저	4조의3	
정보	3.위임법령	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	경 제12조제1항 (입법예	고 완료)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¹ 17.7.28.∼9.6.
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공동유대 변경의 기	준 등을 금융위원회가 신협을 지원함으로써	당에서는 지역신협의 정하도록 함 자금이 필요한 지역
규제의 필요성	7.규제내용	이상의 제재(1년간) ②재무 (1)재무상태기이상(2년말연속) (3)되 ○ (전부확대 기준) ① ②재무 (1)재무상태기이상(2년말 연속) (3) 1천억원 이상 ③서민금융지원 (1)대명 80%이상 또는 ○ (일부확대 범위) 3	유무 배선조치 대상 여부(1년 고정이하여신비율 2.5% 법규준수 일부확대 기배선조치 대상 여부(1년 고정이하여신비율 2%이 기타 1년	준과 동일 년간) (2)순자본비율 4% 하(2년말 연속) (4)자산 연속) (2)조합원 대출 (2년말 연속) 이하 읍·면, 신협부재
	8. 피 규제 집 단 및 이해관계자	유형 피규제자 신용협동조		의견 의견 수렴방식 내용 입법예고 -
	9.기대효과		한 자금공급 및 신용대 준을 명문화하여, 투명	출 공급 확대 유도 한 변경승인절차 제고
	10.영향평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
규제의	여부	해당 없음	해당 없음	해당 없음
적정성	11. 비용편익 분석	공동유대 확대를 통 것으로 판단되나, 구		익성이 다소 개선될 곤란
기타	12.일 몰설 정 여부	해당 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	행	개 정 안
현 <신 설>	행	개 정 안 제4조의3(공동유대 변경의 승인기준 등) 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. 1.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경우 가. 조합이 최근 3년간 법 제 100조에서 정하는 별금형에 과(科)해지지 아니하였을 것 나. 조합이 최근 1년간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. 제12조제3항에서 정하는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 또는 재무상태개선조치가 종료된 후 1 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이 아닐 것 라.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: 최근 2년 사업년 도말 기준 100분의 2이상 마. 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" 고정"이하 분류 여신비율 : 최근 2년 사업년 도말 기준 1000분의 25이하
		 2.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경우 가.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 나. 총자산 : 직전 사업년도말 기준 1천억원 이 상

- 다.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: 최근 2년 사업년 도말 기준 100분의 4이상
- 라. 여신총액대비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" 고정"이하 분류 여신비율 : 최근 2년 사업년 도말 기준 100분의 2이하
- 마.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대율 : 최근 2년 사업연도의 마지막 월 기준 100분의 60이상
- 바.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것
- 1) 대출총액대비 조합원에 대한 대출비율 : 최 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80이상
- 2) 대출총액대비 신용대출비율 : 최근 2년 사 업년도말 기준 100분의 7이상
- ②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유대의 범위는 3개 이내의 동 또는 2개 이내 의 읍 • 면으로 한다. 다만, 공동유대로 포함하고 자 하는 읍 • 면 • 동에 타 조합의 공동유대가 아 닌 읍·면·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5개 이 내의 동 또는 3개 이내의 읍 • 면으로 한다.
- ③ 조합이 공동유대에 포함하고자 하는 전체 읍・ 면ㆍ동의 외부 경계는 현재의 공동유대에 접하 여야 한다.

등의 비상임 기 3과 같음) 준) (생략)

제4조의3(이사장 제4조의4(이사장 등의 비상임 기준) (현행 제4조의

- 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-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- □ **(추진배경)** 지역신협은 신용대출*과 조합원대출* 비중이 낮아, 실제 자금이 필요한 **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이 미흡**한 측면
 - * 신용대출비율, 조합원(타 상호금융기관은 준조합원 포함)대출비율 (16.12월말)

구분	전체상호금융	전체신협	지역신협	직장신협	단체신협
신용 대출비율	8.0 %	6.7 %	4.6 %	57.6 %	21.7 %
조합원 대출비율	68.0 %	75.3 %	74.8 %	94.8 %	81.3 %

- 지역·조합원 중심 신협을 지원함으로써 자금이 필요한 지역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 유도할 필요
- □ (정부개입 필요성)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는 같은 시·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·면·동을 범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,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같은 시·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·면 ·동을 포함할 수 있으나 세부기준을 명문화 하지 않음
- 입법중인 **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**에서는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변경의 기준 등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감독규정에서 세부기준을 정할 필요
-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-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- □ (대안의 내용) 일부확대 기준
- ① **법규준수** (1)조합의 벌금형(3년간) 및 (2)경고 이상의 제재(1년간)유무
- ② 재무 (1)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(1년간) (2)순자본비율 2%이상 (2년말연속) (3)고정이하여신비율 2.5% 이하(2년말 연속)

□ 전부확대 기준

- ① 법규준수 : 일부확대 기준과 동일
- ② **재무** (1)재무상태개선조치 대상 여부(1년간) (2)순자본비율 4%이상 (2년말 연속) (3)고정이하여신비율 2%이하(2년말 연속) (4)자산 1천억원 이상
- ③ **서민금융지원** (1)예대율 60%이상(2년말 연속) (2)조합원 대출 비율 80%이상 또는 신용대출비율 7%이상(2년말 연속)

□ 일부확대 범위

- 3개 이하 동 또는 2개 이하 읍·면, 신협 부재지역의 경우 5개 이하 동 또는 3개 이하 읍·면
- ※ 전부확대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1개 시・군・구에 속하는 모든 읍・면・동으로 규정

□ (선택 근거) 기관경고 및 벌금형 유무

- 건전성 및 사고위험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조합에 공동유대 확대는 곤란
- * (현행) 기관경고의 경우 3년간 신규사업 제한 \rightarrow (개선) 1년으로 완화 하는 제재개혁 반영

□ 재무 요건

- ① **재무상태개선조치여부** : **부실조합**에는 **영업구역 확대의 효과**와 유사한 **공동유대 확대는 부적절**함을 고려
- ② 자산규모 : 일부확대 \rightarrow 제한없음 / 전부확대 \rightarrow 1천억원 이상
- 공동유대 확대시 **지사무소 설치를 위한 인적·물적자원** 확보 및 내부통제 등을 위해서는 **일정수준의 자산규모 필요**
- 자산규모 상향 조정에 따른 **과도한 수신유치** 등 **부작용을 방지**하기 위해 **지역신협**의 **평균이상**으로 설정

※ 총자산(평균): '14년말 797억원, '15년말 877억원, '16년말 990억원 펀드판매허용기준: 2천억원 이상

총자산요건 충족조합 현황('16년말 기준)

(단위:개,%)

구 분	5백억원	1천억원	2천억원	3천억원
충족 조합	460(69.0)	220(33.0)	64(9.6)	26(3.9)

- ③ **순자본비율** : **일부확대→2% 이상** / **전부확대→ 4% 이상** (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)
- 2%는 재무상태개선조치의 기준인 점과, 4%는 지역조합의 평균 수준인 점을 고려
- 전부 확대의 경우 **일부 확대의 현재 기준(2%)보다 높은 수준**의 순자본 비율을 적용
- * '17.7.1.부터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**출자금이 포함**될 예정이므로 경영지도비율 상향조정시 순자본비율의 요건도 그에 연동되도록 설정할 필요
 - ※ 순자본비율(평균) : '14년말 3.56%, '15년말 3.70%, '16년말 3.94% 펀드판매 허용·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: 3%↑

순자본비율 요건 충족조합 현황(15말, 16년말 동시충족)

(단위:개,%)

구 분	3%	4%	5%	6%	7%
충족 조합	337(50.6)	187(28.1)	94(14.1)	49(7.4)	29(4.4)

- ④ 고정이하여신비율 : 일부확대→2.5% 이하 / 전부확대→ 2% 이하 (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)
- **2%**는 **지역조합의 평균 수준**인 점을 고려
- 전부확대의 경우 현재 일부확대 기준(2.5%)보다 높은 수준의 여신
 심사관리능력이 필요

※ 고정이하여신비율: '14년말 2.50%, '15년말 1.75%, '16년말 2.07%

고정이하여신비율요건 충족조합 현황('15말, '16년말 동시충족)

(단위: 개,%)

구 분	1%	1.5%	2%	2.5%
충족 조합	181(27.2)	288(43.2)	382(57.4)	456(68.5)

□ 서민금융 지원 실적

- ① 예대율 : 60% 이상 (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)
- 인센티브 부여취지와 서민금융실적 **지표 왜곡 방지*** 등을 위해 **일정** 수준의 예대율 하한선 필요
- * 유가증권 투자로 예대율이 30%~40%에 불과한 조합이 승인기준을 충족하는 문제
- **지사무소 승인요건**(중앙회장)에도 **예대율(60%이상)이 포함**되어 있으며, 공동유대 확대시 **지사무소 설치가 수반**되는 점 등 고려

※ 예대율(평균) : '14년말 71.0%, '15년말 74.5%, '16년말 75.8% 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: 60%↑

예대율 기준 충족조합 현황('15말, '16년말 동시충족)

(단위 : 개, %)

구 분	50%	60%	70%
충족 조합	601(90.2)	483(72.5)	271(40.7)

- ② **신용대출 비율** : **7% 이상** (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)
- 인센티브 도입 취지 등을 감안하여 **지역신협의 평균 신용대출** 비중(4.6%)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설정

※ 신용대출비중 : '14년말 5.6%, '15년말 5.3%, '16년말 4.6% 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: 10%↑(수협 7%↑)

신용대출비중요건 충족조합 현황('15말, '16년말 동시충족)

(단위: 개,%)

구 분	6%	7%	8%	9%	10%
충족 조합	248(37.2)	210(31.5)	179(26.9)	146(21.9)	130(19.5)

- ③ 조합원 대출 비율 : 80% 이상 (최근 2년 사업년도말 기준)
 - **상호부조 성격**의 상호금융기관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지역신협 평균(74.8%) 이상으로 설정
 - ※ 조합원대출비중(평균) : '14년말 81.1%, '15년말 78.2%, '16년말 74.8% 고위험대손충당금적립완화 기준 : 80%↑

조합원대출비중요건 충족조합 현황('15말, '16년말 동시충족)

(단위: 개,%)

구 분	70%	80%	90%
충족 조합	470(70.6)	289(43.4)	113(17.0)

- ※ 신협 이용고객의 특성과 조합의 신용평가능력 등을 감안시 신용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화 우려 → 조합원대출비중과 신용대출비중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서민금융지원 실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
 - * 다른 조건을 충족하는 조합중 조합원대출비중과 신용대출비중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은 없음

□ 일부확대 범위

- **일부확대는** 행정구역 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동유대에서 제외된 읍면동을 재편입 하는 경우와 신도시의 개발 등으로 인한 실제 경제권 및 생활권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
- 잘하는 조합에 대한 인센티브인 전부확대의 범위가 1개 시·군·구 인점을 고려하였으며, 현재 감독원이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 일부 확대 범위를 그대로 반영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신협중앙회	의견서 등을 통해 의견 수렴	특이사항 없음
신협 등	시행령 변경예고로 의견 수렴 예정	특이사항 없음

3. 기대 효과

- □ (일부확대) 실제 경제권 및 생활권을 반영한 공동유대 설정이 가능하여 실질고객 중심의 영업기반 확충
 - 행정구역 변경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공동유대에서 제외된 읍· 면·동의 재편입 가능
- □ (전부확대) 지역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 및 신용대출 공급 확대 유도
 - 지역 조합원 중심 조합은 공동유대 확대를 통해 **대출 등 영업** 기반 확대 가능
- □ (공통) 공동유대가 확대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서민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다양한 금융편의(비과세 혜택 및 복지사업 이용 등)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
 - 공동유대 변경의 **기준**을 **명확히** 하여, 공동유대 변경의 **승인** 과정의 투명성의 제고

Ⅱ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□ (규제목적) 실제 경제권 및 생활권을 공동유대의 범위에 반영하고, 지역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동유대 확대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기 위함
- □ (규제수단) 각 기준의 요구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니나, 여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해당하는 조합의 수는 제한적임

 다만, 인센티브 취지 및 외형확대에 따른 부실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대상 확대는 자산규모 성장 및 서민금융 지원실적 상향 등과 함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- □ 해당사항 없음
-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- o 해외사례
- □ 해당사항 없음
- o 타법사례
- □ 타 상호금융업 관련 법령도 하나의 시·군·구를 구역의 기본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주무장관 등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이상을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음
- o 다만, 공동유대의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이나 조건 등을 명문화 하지는 않음

농협법

제14조(구역과 지사무소) ① 지역농협의 구역은 「지방자치법」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<u>하나의 시·군·구</u>에서 정관으로 정한다. 다만, 생활권·경제권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·군·구를 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로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.

수현법

제14조(구역 및 지사무소) ① 지구별수협의 구역은 <u>시·군의 행정구역</u>에 따른다. 다만,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산림조합법

제13조(구역과 사무소) ① 지역조합의 구역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<u>시·군·</u> <u>구</u>(구는 자치구를 말하며, 이하 "시·군·구"라 한다)의 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시·군·구의 구역으로 조직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구역을 정할 수 있다.

Ⅲ. 규제의 실효성

- 1. 규제의 순응도
-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- □ 일부확대는 현재의 기준과 유사하고, 조합원 및 지역에 충분히 자금을 지원하는 조합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 하려는 목적인 점을 감안할 때 규제 준수 가능
- □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, 기존의 규제를 명문화하거나, 인센 티브의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며, 타 기관에는 명시적 기준 자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규제자의 비준수 가능성은 낮음
- 0 규제 차등화 방안
- □ 공동유대 확대의 기준에 적합한 조합에 한하여 일부확대 및 전부 확대의 대상이 되도록 차등화 함
- 2. 규제의 집행가능성
- o 행정적 집행가능성
- □ 기존의 승인절차 체계하에서 공동유대 변경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**추가적인 인력 소요 없음**

o 재정적 집행가능성

□ 신협의 공동유대 확대 기준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**추가적인** 예산 소요 없음

3. 대안별 비용 · 편익 분석

가. 대안별 분석 비교표

가격기준연도	현재가치 기준연도	분석대상기간 (년)	할인율(%)	단위	
2016	2016	1	0	백만원, 현재가치	

규제대안 1 : 조합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 등									
영향집단		비용 편익		순비용					
피규제 기업	직접	0		0					
· 소상공인	간접								
피규제 일반	국민								
피규제자 이외 기업									
· 소상공인									
피규제자 이외 일반									
국민									
정부									
총 합계		0							
기업순비용		0	연간균등순비용	0					

나.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ㆍ편익 분석 결과

① 피규제 기업·소상공인 :

□ 간접편익 : -

	•
(정성)제목	전체확대의 기준에 조합원대출비율 및 신용대출비율 포함
분석	지역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 및 신용대출 공급 확대 유도
근거설명	□ 공동유대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합은 조합원대출과 신용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조합은 지역·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

역할에 어려움	충실하게	될	것이나	구체적인	편익을	산출하는	것은

□ 간접편익 : -

(정성)제목	공동유대 확대기준의 명문화
분석	조합의 예측가능성 및 승인절차의 투명성 제고
	□ 조합은 공동유대확대가 가능한지 예상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

	□ 조합은 공동유대확대가 가능한지 예상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장기적인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음
근거설명	□ 금감원 등 감독기관이 승인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사용하여 승인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, 이는 금융당국의 신뢰도 등에 도움

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개정=	중인 신	용협동	조합병	법시행령	형 개정인	<u>•</u> 에서는	지역	신협	의	공동
유대	변경의	기준	둥을	금융우	^귀 원회가	정하도	록 하	-고	있으	므로
이륵	감독규?	정에서	정학	픽 0						

2. 향후 평가계획

공동유대변경의 승인절차를 진행하면서 변경되는 재무상황	등을
고려하여 일부 불합리한 기준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, 필요한	경우
보다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가 보완책	등을
검토할 예정	

3. 종합결론

□ 실제 경제권 및 생활권을 반영한 공동유대 설정이 가능하여 실질 고객 중심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, 지역 조합원에 대한 자금공급 및 신용대출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